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5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 강대식 · 송언석 · 정동만

강선영 • 이종배 • 유용원

조지연 · 강승규 · 김용태

김예지 · 최은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, 체육선수, 대중 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, 그 병적은 현역·보충역·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77 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1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, 제5항 및 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64조제1항제1호,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·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. 다만,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있다.
-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,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

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, 진료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 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4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191호 병역법	법률 제20191호 병역법		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		
제77조의4(공직자 등의 병적 관	제77조의4(공직자 등의 병적 관		
리 등) ① ~ ④ (생 략)	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		
	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
	하는 사람이 제14조, 제14조의		
	<u>2, 제14조의3, 제64조제1항제1</u>		
	호,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5		
	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		
	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		
	이후에도 그 질병・심신장애		
	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		
	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		
	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		
	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		
	있다. 다만, 외관상 명백한 신		
	체적 장애 가 있는 경우 등 대		
	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		
	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.		
<u><신 설></u>	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		
	<u>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</u>		
	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,		
	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		

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 리하는 정보·자료를 공개·누 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부터 <u>제5항</u>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 리,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
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
는 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의 장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
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
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, 진
료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
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
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
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
라야 한다.
라야 한다.
<u>라야 한다.</u> ① 제1항, 제5항 및 제
<u>라야 한다.</u> ① 제1항, 제5항 및 제
<u>라야 한다.</u> ① 제1항, 제5항 및 제
<u>라야 한다.</u> ① 제1항, 제5항 및 제
<u>라야 한다.</u> ① 제1항, 제5항 및 제
<u>라야 한다.</u> ① 제1항, 제5항 및 제 6항
<u>라야 한다.</u> ① 제1항, 제5항 및 제 6항